

선거규정

개정일 1994.3.1.
최근 개정일 2024.03.01
학생처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 52조 및 총학생회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학생회 정, 부회장 및 총대의원회 정, 부의장 각 학부 학회장, 전공대표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유원대학교 총학생회 정,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② 총대의원회 정, 부의장, 총동아리연합회 정, 부회장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각 학과 학회장의 선거는 해당 학과 학생회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유원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되, 별도의 규정 개정은 다음해에 적용하여 운영한다.

④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학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자문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절 선거관리일반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유원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선출된 인원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각자는 의결권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영동캠퍼스, 아산캠퍼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이의제기 등을 포함한 선거사무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 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총원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학생

2.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학생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당해 선거 학생회의 학생자격을 상실한 때

2.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때

⑧ 위원회는 실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기획, 총무, 홍보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주의,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의 심사,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 및 선거사무에 관한 유권해석

5.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선거사무처리상 필요할 때와 후보자의 부정행위 및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 위원장은 단독으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 3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7 조 (선거권) 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모든 유원대학교 학생은 선거권이 있다

1. 선거당일 현재 제적, 자퇴 등으로 총학생회 학생 자격이 소멸된 자
2. 선거당일 현재 휴학 등으로 총학생회 학생의 자격을 가진 자

제 8 조 (피선거권) 1.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2. 전체학기 성적평균이 3.0 이상인 자(개정 2024.03.01.)

3. 4학기이상 ~ 7학기 등록대상자

4. 품행이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제 4 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9 조 (선거기간) ① 총학생회임원의 선거기간 선거일정 공고 후 2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10 조 (선거일) ① 임원선거의 선거일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전 15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거인명부

제 11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절 후보자

제 12 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거일정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03.01.)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재학생 1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장 1부

3.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회비 납부 증명원 각 1부(단,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학생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4. 출마 소견문(200자 원고지 30매 이내) 1부

5. 핵심선거공약, 으뜸구호 1부

6. 공동 정책 자료집 편집 원고(A4규격 10매 이내) 1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 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 ③ 제1항 2호의 후보자 추천장은 위원회가 검인. 교부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 날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천장의 교부는 선거권자의 150명 이상 받을 수 있는 매수로 하며, 위원회는 검인 란에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개정 2024.03.01.)
- ④ 선거권자는 1후보자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교부받은 추천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추천장과 교체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제 13 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및 제 44조 제2항의 명시된 경고 3회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등록 무효 전에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절 선 거 운 동

제 16 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를 제외한 후보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당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 현 총학생회 정, 부회장
3.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

제 18 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 24:00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추천기간(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이전에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명의를 건 지지, 추천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공고일의 다음날 전에 후보자의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에 관계된 물품의 배부 또는 판매, 유인물의 배포 등을 말한다.
- ④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본부를 둘 수 없다.

제 19 조 (선거운동본부) ① 후보자마다 1개소의 선거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학내로 제한한다.
- ③ 각 학생회의실(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과 학생편의시설(식당, 학생휴게실)은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동일 장소를 서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와 연락처를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늦어도 그 다음날까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벽보(길이 53cm 너비 38cm, 4절)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 후 2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150매 이내에서 첨부 장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선거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첨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 21 조 (공동정책자료집) ① 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자료를 담은 공동 정책 자료집을 선거운동기간 중 1회 발행, 배부 한다.

② 공동 정책 자료집의 규격은 가로 21cm X 세로 29.5cm(A4용지)로 하며, 색도에는 제한이 없고 후보자마다 5매(10면)까지로 한다.

③ 후보자는 5매 이내에서 정책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후보자의 경력 등 이력사항과 후보자의 사진(A4용지 규격의 8/1을 초과하는 크기의 사진을 말함) 등 후보자의 홍보의 관한 사항의 게재는 그 중 1매(2면) 이내로 제한된다.

④ 후보자는 공동 정책 자료집에 실린 원고를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공동 정책 자료집의 발행부수는 학생 10명당 1부를 기준으로 하며, 위원회는 학생수의 정원에 비례하여 낮아도 선거일전 4일까지 각과에 배부한다. 학과학생회장은 수령 즉시 학년별로 균등하게 배부하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 (합동토론회등) ① 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옥내에서 1회 개최하되, 위원회는 합동 토론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토론시간, 방법 등을 결정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합동토론회 개최 안내 벽보를 20매 작성하여 개최 2일전까지 첨부하고, 학교 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고지한다.

④ 개인연설 및 대담은 버스정류장, 광장, 휴게실, 식당 등 선거권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 (어깨띠, 피켓) ① 후보자 및 선거운동도우미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공약사항, 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깨띠 및 피켓의 수량은 후보자마다 20개를 넘을 수 없다.

제 24 조 (인터넷이용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E-mail 송부,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판과는 별도로 후보자마다 선거운동 고정란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5 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①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8 절 투 표

제 26 조 (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한다.

③ 사전투표 실시여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되,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투표소설치) ① 투표소는 심우관, 창조관, 탐구관에 설치한다. 투표소의 명칭은 건물명 다음에 ‘투표소’ 라고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9일까지 투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건물별로 설치된 투표소는 해당 공학관에서 추천한 위원이 담당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가 총투표소의 숫자일 때에는 별도의 투표관리위원을 선거일전 5일까지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하고 공고한다.

④ 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2명씩의 후보자 측 참관인을 둔다.

제 28 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임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용지 색상을 서로 달리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기재하고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 29 조 (투표시간) 투표는 오전 09시 30분부터 오후 06시 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0 조 (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③ 착오 등으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당해연도 학회장이 명단을 통보한 자가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 하단에 성명, 학번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④ 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날인된 본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인과 일련 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일련번호가 빠른 투표용지 순으로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때 이상이 있는 투표용지가 발견되면 그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맨 뒤인 투표용지 다음으로 돌려서 보관하여 선거권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하고 투표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⑥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자신의 잘못으로 이를 훼손한 경우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

제 31 조 (투표함 등 봉인, 이송) ① 위원은 투표개시 시각 전에 기표대 및 기표용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참관인(참관인 미 출석 시는 최초로 투표하러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함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한 후 투표함 뚜껑을 덮고 투표지 투입구를 제외한 투표함의 가장자리의 틈을 위원,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이 함께 봉인한다.(이 때 투표함 안뚜껑에 별도의 자물쇠 고리가 부착 된 투표함의 경우에는 안뚜껑용 자물쇠를 채우고 자물쇠도 봉인한다) 투표함의 앞면에는 투표소명이 기재된 투표함의 표지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투표마감시각이 되면 투표소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을 경우 투표소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투표소의 출입문을 닫고 투표하게 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은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를 봉인한다.(이 때 겹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후 봉인한다.)

③ 위원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이 서명 날인한 후 투 입봉투에 넣

어 봉함 봉인하고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기표용구도 각각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위원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이 봉인한다.

- ④ 제2항의 투표함과 제3항의 투표관계서류 등은 위원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이 동행하여 개표장소로 옮긴다.
- ⑤ 선거인명부, 보관용 용지는 한곳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고, 개표 시 봉인을 해제한다.

제 32 조 (투표참관) ①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마다 선거권자중에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⑤ 각 후보자는 참관인을 정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3 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자, 위원회위원, 위원회선거사무원,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위원회 위원, 위원회선거사무원,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 9 절 개 표

제 34 조 (개 표)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 9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개표사무원을 둔다.
- ③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투표소의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의 대조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집계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5 조 (개표참관) ① 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투표참관인과 함께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및 일반회원은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없다.

제 36 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① 위원회 위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위원회 위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은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 37 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매워진 것으로 당해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가 묻어서 훼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38 조 (선거의 정리) ① 위원회는 투표소별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학생감동본부로 인계하여야 하며, 학생감동본부는 이를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절 당 선 인

제 39 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총 투표율이 40% 이상만 되면 투표를 진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그 당선인과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과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1 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지체 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절 재 선거

제 42 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 12 절 이의신청, 징계

제 43 조 (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후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위원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4 조 (징계) ① 징계라 함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시에는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시정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해당후보자(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며, 주의와 경고는 문서로 통지하되,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경고는 통지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자가 이를 1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1회를 주며, 주의를 받고도 또 1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주의 1회를 추가한다.

⑤ 경고(주의 2회로 경고 1회가 되는 경우 포함)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경고 접수 후 12시간 내에 공개사과문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징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선거운동본부장은 경고(주의 2회로 경고 1회가 되는 경우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후보가 경고 3회로 인하여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될 상황이 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3조 피선거권은 1996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1994학년도에 있어서는 제3조 1항 제1호를, 1995학년도에 있어서는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7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일 현재 시행중인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6년 9월 1일자 교명변경에 따라 “영동대학교”를 “유원대학교”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